

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운영희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67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운영희, 강석주, 경기문,  
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 
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 
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 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 
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 
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 
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  
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 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 
윤종복, 이경숙, 이병운,  
이상욱, 이종태, 이효원,  
임춘대, 장태용, 채수지,  
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 
최호정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5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, 이 중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최저인 0.59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.
-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이에 다자녀 가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인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,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 (안 제20조제1항제14호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, 지방자치법 ,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.

14.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(다만, 서울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.)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><u>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 한다.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| <p>2.·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|